

제 호
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

법인(기관·단체)명:

소재지:

대표자 성명:

대표자 생년월일:

위 법인(기관, 단체, 시설)을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장관

※ 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확인·발급합니다.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
(○○지역본부·지사)

직인